

군산 신역세권 한라비발디 센트로 인지세 납부 안내



※ 본 안내문은 편집 및 인쇄과정에서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당첨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직접 확인하시고 준비 하시기 바랍니다.

■ 인지세 안내

- 인지세는 인지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분양 계약 시 납부하여야 하며, 수분양자의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.

[인지세 납부시기 :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(분양 및 전매 포함) 계약 시]

※ 인지세는 재산권에 관련한 계약서 작성 시 첨부하게 되는 수입인지의 가격이며, 수입인지는 수수료나 세금을 냈다는 증빙으로 사용 됩니다.

- 미납부 또는 전자수입인지 분실 시 기간에 따라 최고 300%의 가산세를 납부하셔야 하오니 이 점 반드시 참고하시어 정부수입인지지를 구입하여 계약서와 함께 보관 하시기 바랍니다.
- 과세 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(1억원 이상 ~ 10억원 이하 : 15만원)를 납입하신 후 정부수입인지를 등기 시 반드시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하셔야 합니다.

■ 전자수입인지 구입처

- 수입인지사이트(www.e-revenuestamp.or.kr), 우체국, 은행(현금 수납만 가능)에서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계약서에 첨부

■ 전자수입인지 구입처

- 납부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 : 무(과소)납부 세액의 100%
-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: 무(과소)납부 세액의 200%
- 6개월 초과 : 무(과소)납부 세액의 300%

■ 인지세 납부기한 및 방법 ※(관련법령) 인지세법 제1조,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8조

- 과세대상 : 분양계약서 및 분양권 전매계약서
- 납부기한 및 방법 : - [분양계약]계약체결일 /[전매]명의변경 승인일
- 계약서를 작성할 때마다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여 납부

■ 인지세(전자수입인지) 구매방법 안내

해당 홈페이지 접속

전자수입인지
(www.e-revenuestamp.or.kr)
또는 네이버 검색창 “전자수입인지” 검색

증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

안전하고 편리한 전자수입인지 납부서비스
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

증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
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

비회원서비스 또는 회원 로그인 후 구매

구매 - 납부정보이력

1. 용도 : 인지세 납부 2. 과세문서종류 : 부동산 등 소유권 이전
3. 금액 : 150,000원 4. 건수 : 1건 5. 확인 및 결제

전자수입인지

※ 전자수입인지는 1회에 한하여 출력 되므로
반드시 프린터 상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(재발행 불가)

(※ 주의사항) 소인

※ 분양계약서 작성 시 전자적 소인을 직접 할 경우 인지세를
재납부 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 하오니 유의 바랍니다.

① 고유번호 : 16자리 (전자수입인지 참조)
② 발급일자 : (예) 20210823